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5.



달 서 구 의 회
박정환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박정환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명확한 검사를 통해 결산자료의 신뢰성 및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증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6조제1항은 대표위원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5월 2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923055
------	----------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의자 : 박정환 황국주 고명우
박왕규 박종길 장호섭
정창근 서민우 남현주
임미연 서보영 김정희
정순옥 강한곤 손범구
이선주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명확한 검사를 통해 결산자료의 신뢰성 및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증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대표위원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 다. 관계법령 : 붙임 3
-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붙임1

개정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 중에 선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u>5명</u>으로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p> <p>② · ③ (생략)</p>	<p>제2조(위원의 정수) ----- ----- -----<u>8명</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 중에 선임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자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 기간에 대하여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결산검사 기간이 중복되는 날짜에 대한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